

이 보도자료는 2024. 11. 27.(수) 14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준호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보도자료

2024. 11. 27.(수)

텔레그램 채널 이용한 마약류 밀수 및 유통조직 적발

- 총책, 드랍퍼 등 유통사범 총 4명 구속기소, 2명 불구속기소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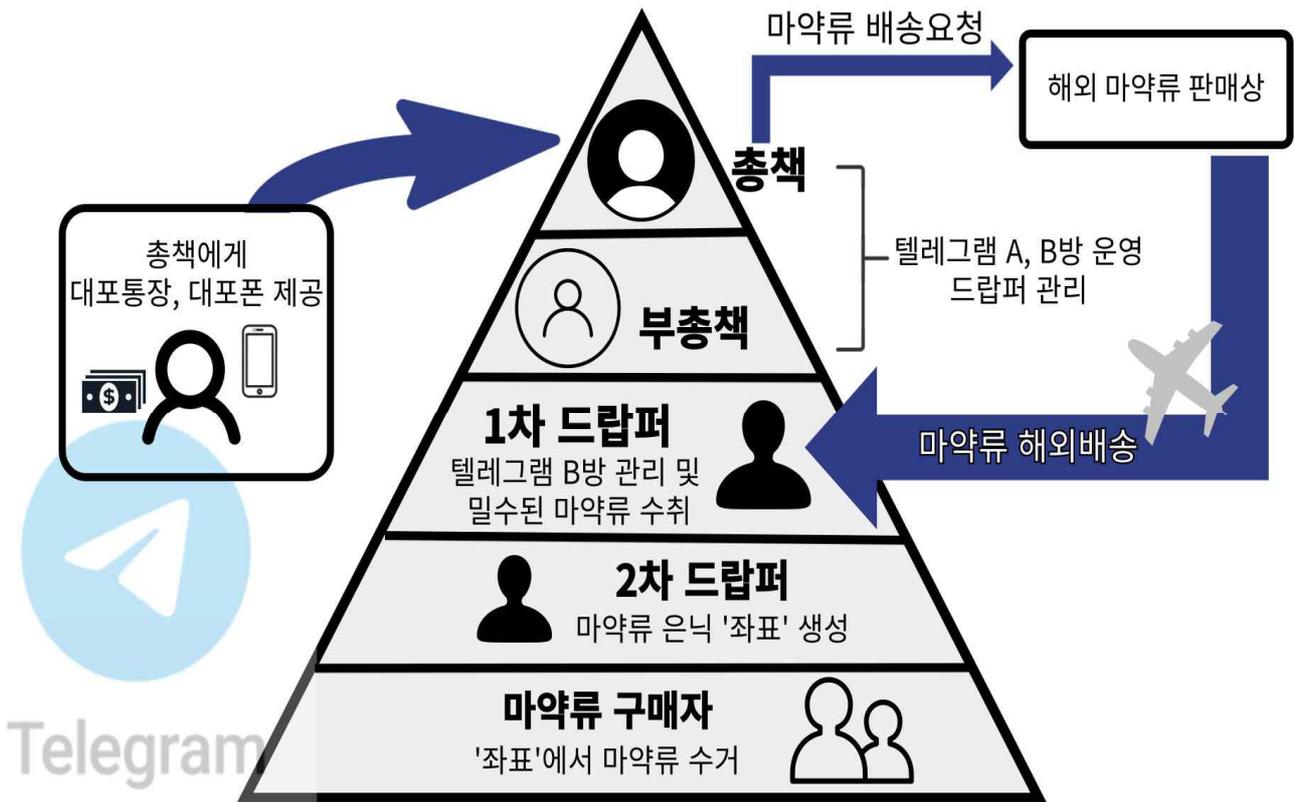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서울중앙지검 「마약범죄 특별수사팀」(팀장 :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)은 '24. 1.경 인천세관 적발의 MDMA* 526정 수입 사건에 대하여 약 10개월간 집중수사한 결과,
 - '23. 11.~'24. 2.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MDMA,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수입·유통한 총책, 드랍퍼 등 마약사범 총 6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기소, 2명을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.

*MDMA : '엑스터시'로 알려진 대표적 환각성 향정신성의약품(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)으로 '80년대 유럽 클럽에서 사용되면서 전세계 확산, 뇌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 초래

- 수사팀은 최초 적발된 MDMA 526정 뿐만 아니라, 해당 텔레그램 채널이 MDMA 합계 2,000정을 수입하고,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하여 합성대마 380ml 등을 유통한 사실을 추가로 규명하고,
 - 피고인들로부터 MDMA 1,747정, 합성대마 283ml, 필로폰 10.54g, LSD 62장 등 시가 합계 1억 4,814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였습니다.
-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등 사용, 텔레그램을 통한 범행 지시·실행, 해외 마약류의 '드랍퍼' 주거지 배송 등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 하였으나
 - 수사팀은 ① 사소한 흔적도 놓치지 않고 서울·수도권 일대를 발로 뛰는 끈질긴 추적 및 잠복 등 현장수사, ② 최신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분산된 개별단서들에 대한 유기적 분석 등을 통해
 - 마약류 밀수, 국내 유통을 주도한 총책, 드랍퍼 등 총 4명을 특정하여 모두 구속하고, 대포폰 등 범행도구 제공자, 마약류 매수자까지 추가 검거하여 기소하였습니다.
- 본건은 「수입→유통→투약」으로 연계되는 마약류 범행의 순환구조를 철저히 규명한 후 범행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여 엄단한 사례로, 검찰은 향후에도 「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」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.

I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마약류 유통 구조



[텔레그램 채널 이용 마약류 유통 구조]

■ 총책

마약류 총책이 텔레그램 채널 개설 후 드랍퍼 모집 및 관리

→ 해외 마약류 판매상에게 마약류 주문 및 발송

→ ① 밀수한 마약류를 소분하여 주택가 등지에 마약류 은닉을 지시하고, 은닉 장소의 사진과 해당 주소의 정보(소위 '좌표')를 확보

② 이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매수자로부터 비대면으로 마약류 주문을 받고, 대금 결제 확인 시, 매수자에게 '좌표'를 전송하여 마약류 판매

■ 드랍퍼

고액 알바 구인광고를 통해 총책에게 고용

→ (2차 드랍퍼) 총책 지시에 따라 마약류 은닉 및 '좌표' 전달

→ (1차 드랍퍼) 텔레그램 하위 채널 개설 후 '좌표' 전송하며 마약류 판매에 직접 참여

II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역할	공소사실 요지	처분
1	A (43세)	총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C와 공모하여 '23. 11.~'24. 1. 사이 MDMA 약 2,000정 및 필로폰 10.54g 수입 ▶ D와 공모하여 '24. 1.~2.경 2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380ml를 수수하고, 그 중 140ml를 서울, 인천 등지에 은닉 	'24. 3. 11. 각 구속기소 / '24. 11. 27. 추가기소
2	B (32세)	부총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24. 2. 합성대마 3ml를 주거지에 보관 	
3	C (30세)	1차 드랍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, B와 공모하여 '24. 1. 1. 독일發 MDMA 526정을 국제통상우편으로 수입 ▶ '24. 1. 12. MDMA 222정, LSD 62장 소지 	'24. 1. 31. 구속기소
4	D (29세)	2차 드랍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, B와 공모하여 '24. 1.~2.경 2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380ml를 수수하고, 그 중 140ml를 서울, 인천 등지에 은닉 ▶ '24. 6.경 합성대마 240ml를 주거지에 보관 	'24. 7. 1. 구속기소
5	E (28세)	마약류 매수자	▶ '24. 1.경 텔레그램 마약류 채널을 통해 LSD 2장, 합성대마 5ml를 60만원에 매수	'24. 11. 27. 불구속기소
6	F (58세)	대포폰, 대포통장 제공자	▶ '23. 6.~8.경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은행 통장을 A에게 양도	'24. 11. 27. 구약식

* **합성대마**는 천연식물인 대마의 화학구조와 다른 **화학적 합성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** (이하 '향정')의 일종, 대마처럼 흡연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**강력한 환각작용**

-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 종류 중 **신체적·정신적 의존성이 가장 심각한 "합성대마, LSD 등"**을 가.목, 그 다음 **"필로폰, MDMA, 케타민 등"**을 나.목으로 규정
- 향정 나, 다, 라.목은 제한적으로 진통, 마취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나, 향정 가.목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의료용으로도 사용 불가능

III

주요 수사 경과

- '24. 1. 인천공항세관, MDMA 526정 밀수 적발
→ 마약류 은닉 우편물 수령하는 1차 드랍퍼 C 검거 및 구속(1. 31. 구속기소)

※ C 검거 과정에서 MDMA 222정, LSD 62장, 합성대마 40mℓ 등 마약류와 전문 드랍퍼들이 사용하는 미세 전자저울 등 마약류 소분·은닉 장비 압수
- '24. 2. C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, 통화내역 등 분석하여 텔레그램 채널 총책 A·B 특정
→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A·B 검거 및 구속(3. 11. 각 구속기소)
- ~'24. 6. 총책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 분석을 통해 2차 드랍퍼 D 특정 후 체포영장 발부받아 신병 추적 및 검거, 구속(7. 1. 구속기소)

※ D 검거 과정에서 합성대마 240mℓ 등 마약류 압수
- '24. 7.~8. 텔레그램 채널 대화내용 분석, 각종 최신 수사기법 동원하여 매수자 E 특정 후 검거(구속영장 기각)
- '24. 8.~10. 유사 사건 분석을 통해 A·B의 추가 마약류 범행 규명
- A에게 마약류 유통에 사용할 대포폰 및 대포계좌를 제공한 F 특정
- '24. 11. A·B 추가기소, E 불구속기소 / F 약식기소

IV

수사결과 및 의의

① 텔레그램 마약류 전문채널의 적발

- (점조직 형태의 텔레그램 채널)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전문채널을 운영하며, 해외에서 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서 드랍퍼를 고용하여 유통
 - 총책과 부총책이 드랍퍼들을 관리하며, 드랍퍼들이 해외 배송 마약류를 수령하여 소분·은닉하도록 한 후 판매
 -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운영되어 범행 가담자들이 서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류를 수입·유통
- 드랍퍼 검거만으로 총책 등 추적 및 검거 곤란
- (드랍퍼 검거 후 총책까지 전원 검거) 1차 드랍퍼 C 검거 후 불과 40일만에 총책 A와 부총책 B를 특정하여 검거하고, 텔레그램 마약류 밀수·유통 전문 채널을 적발
 - 또한 C가 검거된 후 A·B가 새로 고용한 2차 드랍퍼 D까지 검거하여 본건 채널의 관계자 전원을 검거하여 구속

② 단건의 마약밀수 사건에서 텔레그램 마약유통의 전모를 규명

- (장기간 집중수사) 최초 적발된 '24. 1. 독일發 MDMA 526정의 수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수거책 C를 검거한 후에도
 - 약 10개월 간의 추적 수사로, MDMA 2,000정 수입, 합성대마 380ml 유통, LSD 및 케타민 등 취급 사실까지 범행 전모를 규명
- (1억 4,814만 원 상당의 마약류 등 압수) 이 과정에서 당초 인천세관 적발의 MDMA 526정 외에도 MDMA 1,221정, 합성대마 283ml, LSD 62장, 필로폰 10.54g 등을 추가로 압수
 - 시가 합계 1억 4,814만 원 상당(약 1만 명 동시 투약분)의 마약류를 압수하여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

③ 「마약류 수입→유통→투약」 연계 범행 규명

- (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) 현재 마약류 수입·유통은 텔레그램 등 해외 SNS, 가상자산, '좌표'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
 - 마약류 유통망의 가장 하단에 있는 매수·투약자도 추적이 어려운 상황
- (끈질긴 추적수사) 수사 개시 당시 특별한 단서가 없던 상황에서 잠복 등 현장 수사를 통해 1차 드랍퍼 C를 검거
 - 이후 C와 마약류 배송 관련 정보, A·B가 흘린 사소한 흔적 등을 놓치지 않고 서울·수도권 일대를 발로 뛰는 끈질긴 추적과,
 - 장기간 축적된 검찰의 마약수사 노하우(Know-How)와 최신 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분산된 개별 단서들에 대한 유기적 분석을 통해 마약 유통책 다수 검거
- (투약자와 범행수단 제공자까지 엄단)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매수·투약자 E 뿐만 아니라 A에게 범행수단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F까지 적발하여 마약류 유통 지원 사범 엄단

④ 텔레그램 채널 폐쇄를 통한 추가 마약류 유통의 원천 차단

- (공범 검거 후에도 계속 범행)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손쉽게 '드랍퍼' 등 하위 공범을 구하고 매수자들과 거래 가능
 - 하위 공범이 검거되어 범행이 적발되더라도, 연락 차단 후 신규 가담자를 모집하여 마약류 유통 범행을 지속하는 행태 반복
- (텔레그램 채널 폐쇄) 텔레그램 마약류 유통의 가담자를 검거하더라도, 위와 같이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의 특성을 고려할 때 텔레그램 채널의 폐쇄 없이는 마약류 유통의 차단 불가능
 - 본건 텔레그램 마약류 밀수·유통 채널의 운영자를 검거하여 위 채널 자체를 폐쇄시킴으로써, 추가적인 마약류 수입·유통을 원천 차단

V**향후 계획**

-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단편적인 마약 수입·판매 수사에 그치지 않고, 「마약류 수입→유통→투약」으로 연계되는 마약류 범행의 순환구조를 철저히 규명하여, 마약류 범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 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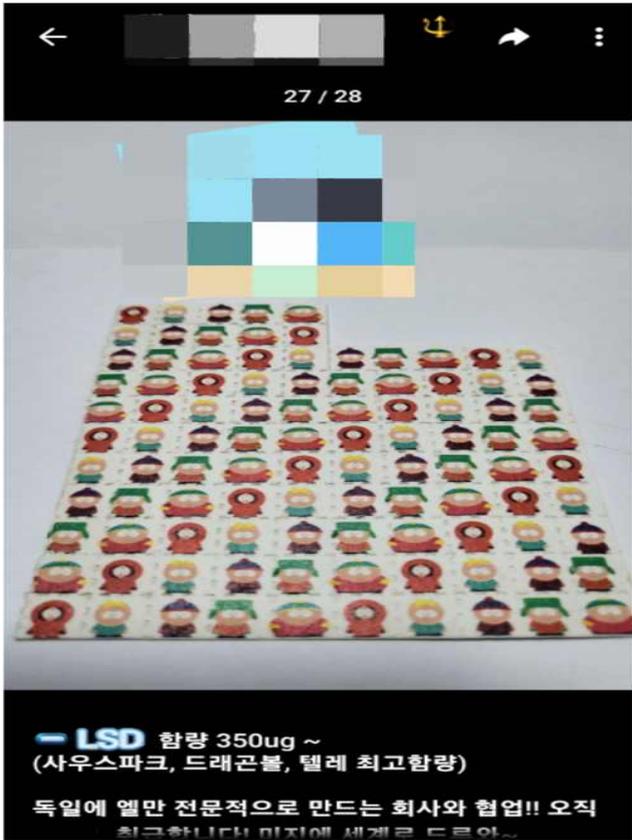
【독일에서 수입된 MDMA와 필로폰】



【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및 범행 도구】



【텔레그램 마약류 채널에 게시된 마약류 광고사진】



【마약류 '좌표'와 그곳에 은닉된 마약류】

